

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 안내

2022. 5.



[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]

【 목 차 】

I. 추진 배경	1
II. 장애대학(원)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내	2
1. 장애대학(원)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	2
2. 장애대학(원)생 법정 지원 사항	4
3. 장애대학(원)생 지원 권고 사항	6
4. 법령 위반 시 제재 사항	11
III. 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지원 안내	12
1. 기본 방향	12
2. 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지원 사항	12
[참고]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('22.2.6.)	15

I. 추진 배경

□ 필요성

- 장애대학(원)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법정사항 및 권고사항 등 안내
- 장애대학(원)생 교육과 관련된 요구를 대학과 시의성 있게 공유
- 정보 제공으로 대학의 장애대학(원)생을 위한 지원 기능 강화
- 소통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장애대학(생) 정책 추진

□ 추진 경과

- 장애대학(원)생을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내('19.~, 연 2회)
-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대학(원)생 지원 안내('20. 2학기~)
- 지원 대상에 장애대학원생도 포함됨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'장애대학생'을 '장애대학(원)생'으로 표기 변경('21. 2학기~)
- 「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」 수립·추진('22.2.~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('22.6.29. 시행)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('22.4.~)

<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이하 '특수교육법」)주요 개정 사항('22.6.29.시행)>

-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,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(특수교육법 제31조제4항 신설)
 - ※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신설 입법예고 사항. 특수교육법 제31조제4항에서 위임한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대학이 장이 제공하는 편의의 내용 구체화
-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(특수교육법 제32조)

II. 장애대학(원)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안내

1 장애대학(원)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
□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

-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·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
- 다만,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가능
- 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31조,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

■ (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업무)

-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- 교직원·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□ 특별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

-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,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 등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
- 다만,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
-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·운영 과정에서도 학내 의사결정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필요
- 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

■ (특별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사항)

-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-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-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

- 장애학생지원센터,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

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

- 장애학생 지원계획은 대학정보공시 공시사항임('21.~)

※ 14-카. 장애 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

-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현황 점검 및 개선 계획 마련

※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'23년 실시 예정(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)

□ 학칙 규정

- 대학의 장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해당하는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

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, 고등교육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4조

■ (학칙 규정 사항)

-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-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
-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('22.6.29. 시행)

2

장애대학(원)생 법정 지원 사항

□ 편의 제공

-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

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

-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활동 편의 제공

- (물적 지원) 확대 독서기, 보청기기,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

- (인적 지원) 장애대학(원)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 지원

- (이동 편의 지원) 통학 및 교내 이동·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 지원

※ 대학 셔틀버스 등 이동편의 제공 시 학생의 장애유형 등 특성을 고려

- (정보접근 지원)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,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지원

※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,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제공

- (편의시설 설치 지원) 장애학생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·설비 설치 지원 등

※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[별표2]에 따라 매개시설, 내부시설, 위생시설,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

<관련 교육부 사업>

- **(국가 근로 장학사업)**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학부 재학생을 교육 지원 인력으로 배치 가능(한국장학재단)
 - **(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)** 일반·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80% 국고 지원, 보조기기 구입 국고 100% 지원 등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- ※ 2학기 교육활동 지원 사업(교육지원인력 인건비 등) '22.8월 신청·접수 예정

□ 차별 금지

- **(입학 시 차별금지)**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

※ (근거)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, 제14조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7항

<입학 시 차별금지 사항>

- 입학전형절차에서 '장애인이 아닌 지원자'와 달리 추가서류, 별도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를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, 추가시험 등 금지
 - 다만,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·확인하기 위한 경우가거나,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가능
 - 입학전형절차 중인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 각 호*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의 적극적 강구 및 제공
- *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, 교육지원인력 배치, 각종 보완·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등

- **(교내·외 활동 시 차별금지)**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·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·배제·거부 금지

※ (근거)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

- (모욕·비하 금지)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, 특수교육교원, 특수교육보조원,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

※ (근거)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

□ 장애 인식 개선 교육

-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■ (장애 인식 개선 교육)
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
- (대상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소속 직원·학생
- (내용)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,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,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
- (방법) 집합교육,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

3 장애대학(원)생 지원 권고 사항

□ 장애학생지원센터(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) 운영

-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전담인력의 안정적 배치
 - 장애대학(원)생 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우선 배치
 - ※ 학습지원, 생활지원, 이동지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 인력 배치
 - 장애대학(원)생 지원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
 - ※ (학생) 재학 중 5번 내지 7번에 걸친 인력 변동이 있었다며 적정 지원 곤란 토로
-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 적극 홍보
 - 장애대학(원)생이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지원 사항 수시 홍보 강화
 - ※ 홍보물 제작·비치, 이메일·문자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활용 안내

- 장애대학(원)생을 위한 진로직업·취업 지원 기능 확대
 - 장애대학(원)생의 취업관련 정보제공,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마련, 상담 및 다양한 정보 제공

□ 특별지원위원회 운영

-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구성에 있어 장애대학(원)생을 포함하거나, 장애대학(원)생에게 특별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□ 대학 내 협력체계 구축 운영

- 장애대학(원)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본부(교학처, 학생처, 입학처) 및 장애학생 소속 학과 등과 적극 협력체계 구축

□ 장애학생 대학생활 적응 및 교수학습 지원

(1) 대학생활 적응 지원

- 고교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사업 참여
 - 고교 및 전공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, 신입생 모집 및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'사회 통합을 위한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' 참여 요청

< 사회통합을 위한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요 >

- (내용) 고교 및 전공과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정보, 대학 전공 체험, 대학 진학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 지원
- (운영방식) 기본계획 수립(교육부) ⇒ 참여대학 모집(교육부, 교육청) ⇒ 학생 수요 조사(교육청, 학교) ⇒ 프로그램 운영(학교, 대학)
- (예산)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
- (일정) '22.5월 중 대학에 안내·참여 수요조사 예정

○ 대학별 전형 시, 편의 수요조사 및 맞춤형 지원

- 입학전형절차 중인 장애 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하여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제공

※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

○ 신입 장애대학(원)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(OT 등) 운영

- 대학의 시설 배치 및 시설 간 이동경로, 수강신청 방법,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등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

[2] 지원 및 소통 강화

○ 장애대학(원)생 장학금 지원 제도 확대

- 장애와 가계곤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장애대학(원)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인재로 육성

○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추진

-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희롱 및 성추행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

○ 장애인 주간 총장 간담회 실시 추진

- 매년 ‘장애인의 날(4월 20일)’ 장애대학(원)생과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자의 장애대학(원)생 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

[3] 교수 학습 지원

○ 수업 참여 편의 지원

- 장애대학(원)생을 고려하여 강의실 배정, 강의계획서 제공, 교재 및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, 시험 및 평가 조정 지원 등

※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 등에 장애대학(원)생 지원 사항 등을 공지

○ 장애특성별 맞춤 지원

■ 시각 장애대학(원)생

- (대체자료 적기 지원)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서비스 활용 및 시각 장애대학(원)생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
 - ※ 시각 장애대학(원)생이 점자 학생증을 원할 경우 대학의 여건에 맞게 점자 라벨러 부착 등
- (보조견 동반 지원) 장애대학(원)생이 동반하는 보조견(표지 부착)의 교내 출입, 엘리베이터 이용, 강의실 출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
 - ※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대상(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 및 제 90조제3항)
- (접근성 고려한 정보 안내) 이미지 파일(PDF 등)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텍스트 파일(HWP 등)과 함께 제공
 - ※ 신청기한이 정해진 안내 자료(예시 : 기숙사 등 각종 신청 안내 자료), 대학 입시 안내자료 등

■ 지체·발달 장애대학(원)생

- 수업 중 학습 지원은 물론 이동 지원·생활 지원*을 위한 지원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한 조치 강구
 - * 함께 식사하기, 함께 공강 시간 보내기, 기숙사 생활 지원 등

■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대학(원)생

- 중복장애 학생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중증 장애에 따른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경증 장애에 따른 지원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
 - ※ (동일 시간 多 인력 지원 가능) 특별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을 통해 국가근로 장학사업의 장애대학생 봉사유형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교육지원인력(일반/전문)을 동일시간 매칭 지원 가능
 - ※ (예) 중증 지체+경증 저시력 학생 대상 이동 지원(장애대학생 봉사)+속기(전문 교육지원인력) 지원

■ 그 외 학생의 지원 요구 및 장애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공

- 현장·교생실습 및 비교과 활동을 위해 학생의 편의 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 맞춤형 지원 제공

[4] 진로 취업 지원

○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취업·진로정보 제공

※ (근거)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

○ 장애학생에게도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

※ 교육부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거점대학의 프로그램 활용 가능

<권역별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 거점대학 운영 현황('22)>

- **(목적)**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원활한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거점대학을 운영하여, 장애대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취업교육 수요 충족 및 양질의 취업기회 확대 추진
- **(내용)** 권역별 거점대학 중심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
권역	학교명	주요 운영 프로그램 및 연락처
서울	숙명여자대학교	·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잡 페어 in 메타버스 · 온라인 취업특강 주간 * (전화) 02-710-9163, (홈페이지) http://resource.sookmyung.ac.kr
인천·경기	강남대학교	·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 · 지역사회 연계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* (전화) 031-899-7179, (홈페이지) http://jcenter.kangnam.ac.kr
강원	가톨릭관동대학교	· 장애대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· 장애대학생 ONE-STOP 온라인 취업 멘토링 등 * (전화) 033-649-7571, (홈페이지) http://www.cku.ac.kr/sites/disable/index.do
충청·대전	나사렛대학교	· 취업 및 심리지원 상담(멘토링) 프로그램 제공 · 장애대학생 고용 연계망(네트워크) 운영 * (전화) 041-570-1617, (홈페이지) http://resource.sookmyung.ac.kr
부산·울산·경남	부산대학교	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운영 · 장애인 현직자와 함께하는 '무엇이든 물어보잡(JOB)' 운영 * (전화) 051-510-3577, (홈페이지) https://sedu-support.pusan.ac.kr
대구·경북	대구대학교	· 진로 취업 체계 구축(자기탐색, 직업탐색, 역량개발, 취업지원까지 관리) · 미래형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교육실시(IT교육, 소셜 마케팅 역량) * (전화) 053-850-5203, (홈페이지) https://disable.daegu.ac.kr
호남	전북대학교	· 진로취업특강 온라인 콘텐츠 제작·배포 · 맞춤형 권역 대학 지원 운영(찾아가는 상담,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) * (전화) 063-270-3493, (홈페이지) https://career.jbnu.ac.kr
제주	제주대학교	· 장애대학생 상담 프로그램('숲속 런치') 운영 · 제주 공공기관 직무체험 교육 제공 * (전화) 064-754-2545, (홈페이지) http://support.jejunu.ac.kr

4

법령 위반 시 제재 사항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를 행하고, 그 행위가 악의적*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* 차별의 고의성,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,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,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고려하여 판단

☞ (제재조치)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※ (근거)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

-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및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

☞ (제재조치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

- 수업, 학생자치활동,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

- 입학·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

☞ (제재조치) 300만원 이하의 벌금

※ (근거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

- ‘특별지원위원회’ 및 ‘장애학생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, 학칙 규정 등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

☞ (제재조치)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 학생정원의 감축,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※ (근거) 고등교육법 제60조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

Ⅲ. 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지원 안내

1 기본 방향

□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· 공지

-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)는 원격수업 운영 지원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장애대학(원)생에게 알려야 함
-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장애대학(원)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

□ 대학 내 협력체계 구축 · 운영

- 원격수업 관리·운영 부서에서는 장애대학(원)생의 원격수업 접속 · 참여 등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* 마련하여 안내
 - * 원격수업 시스템 상에서 안내하고, 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지원(속기, 대필 등)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하도록 안내 병행
-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편의지원 적극 강구

2 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지원 사항

□ 공통

- (사전조사 및 지원계획) 모든 장애대학(원)생이 원격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
 - 장애유형·정도를 고려하여 수강과목에 맞는 속기, 자막, 수어통역, 대필 및 평가수준 조정 등 학기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

- (사전자료 제공)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수에게 사전에 강의계획서, 수업자료 등을 요청하여 장애대학(원)생의 수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 - ※ 수업자료의 디지털 변환(최소 하루 전 제공), 수강 신청을 위한 정보 필요
- (장애대학(원)생에게 적기 제공 노력) 장애유형별 지원 준비에 요구되는 내용·절차·소요기간 등을 교수에게 적극 알리고 협조 요청
- (교육지원인력) 장애대학(원)생에게 전 과정에 교육지원인력 적극 지원
 - ‘교육활동 지원 사업’을 통해 수업 중 속기사, 수어통역사,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및 과제관련 보조* 지원
 - * 과제를 위한 자료검색, 과제자료 제작 지원, 과제물 온라인 제출 등 가능
 - 전문분야(예 : 공학, 법학 등) 및 외국어 강의 등을 수강하는 경우 대학원생 등 전문성 있는 교육지원인력 확보 필요
- (원격강의 질 담보) 장애대학(원)생 수강과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 - 장애대학(원)생 수강 과목의 화면 및 음향 상태 사전 확인 등 필수
 - 실시간 강의*는 저작권 범위 내 가능한 경우 녹화파일 공유, 녹화강의**의 재생시간·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장
 - * 교수자의 말이 빠르거나 잡음 등으로 이해 못한 부분 보충 필요
 - ** 원격으로 실시간 속기가 이루어져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
 - 타 대학 또는 오픈플랫폼 제작영상 활용 수업은 자막제공 등 확인, 자막제공이 되지 않을 시 실시간 속기 등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
- (보조기기 대여 활성화) 대학에서 구비하고 있는 보조기기 및 ‘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(‘22)’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를 장애대학(원)생에게 안내하고 적극 대여
 - ※ 대학에서 구비하고 있는 보조기기가 부족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 지원

- (기타) 장애대학(원)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학생지원 센터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

□ 청각·시각 장애대학(원)생 지원

- 장애대학(원)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유형·정도를 고려
 - 출석체크*, 평가** 등에 있어서 학생의 상황에 맞는 방식 적용
 - * (예시) 실시간 강의에서 청각 장애학생은 접속으로 인정하는 방식(○)
예고 없이 불러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(×)
 - ** 장애학생의 유형·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시간 연장, 대면시험 실시 등 지원
 - 제작영상 또는 녹화강의는 자막제작·지원, 실시간 강의는 실시간 속기 등 지원하고 수업 후 속기록 제공(정해진 시간에 탑재·공유)
 - * 시각 장애대학(원)생에게는 시각자료(동영상 등)에 대한 화면해설 지원 필요
 - 시각 장애학생이 LMS, 원격강의 플랫폼 등 접속·활용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인력* 등을 통해 접속, 과제물 탑재 등 지원
 - * 구글(Google) 크롬 원격 데스크톱 등을 활용하여 원격 지원(개인정보 등 유의)
-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(원)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자에게 유의사항 사전 안내 및 협조 요청

<원격 수업 진행 시 교수자 유의사항>

- 사전 강의계획서 및 수업자료 탑재
- 입모양과 얼굴표정, 손짓 등을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권장
- 강의안만 화면에 보여주는 경우 속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을 설명하고 있는지 마우스 포인터 등으로 실시간 표시 필요
- 시험시간 연장 및 과제제출 시간 연장 등 장애학생에게 맞는 평가방식 적용
-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인력의 수업 참여에 대한 허용
- (청각) 교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자막, 실시간 속기 등 필수
- (시각) 지시어(여기, 저기, 이쪽 등)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하게 설명 필요
- (시각) 그림 또는 화면을 설명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화면해설 지원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장애대학(원)생의 증가 추세*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 개선, 코로나19 등으로 장애대학(원)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

* (2006) 4,045명 □ (2010) 5,213명 □ (2016) 8,747명 □ (2020) 9,717명

- 장애대학(원)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, 실질적 학습권 보장,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체계 구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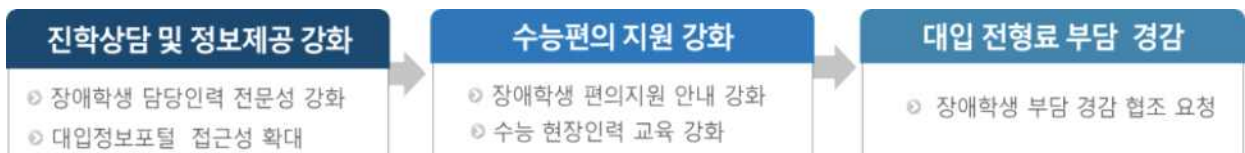
□ 추진 과제(안)

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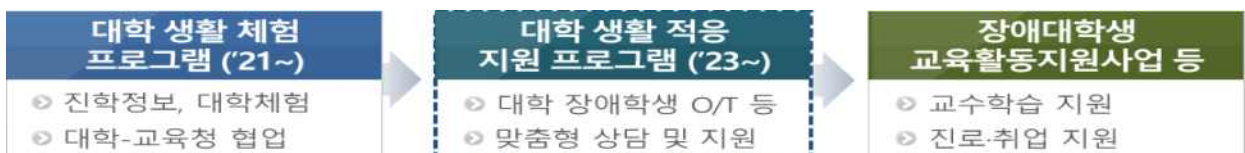
- (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개선) '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(가이드라인)*'을 마련하여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,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하여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 유도

*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·운영 관련 준수사항, 수험생 편의제공 등 안내

- (장애학생 대학 진학 지원 강화)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상담 지원, 정보제공 개선, 수능 편의 지원 강화 등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유도



- (대학 인프라 활용한 교육기회 확대) 대학생할 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 하고 원활한 대학생할 적응을 연계하여 지원



-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,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(모델) 개발 추진

② 대학 역량 강화 지원 및 책무성 강화

- (중앙 및 권역별 대학 지원체계 마련) 국가 수준의 '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*'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(원)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 규모 확대**·역할 강화를 통해 권역 내 대학의 역량 제고 지원

* 주요 기능(안): 대학별 실태 평가 및 상담(컨설팅), 연구, 연수 등

** 권역별 거점대학 : ('21) 7개교 → ('22) 8개교

- (실태평가 운영 개선 및 지원 정보 공개 강화)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*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

* 평가기관 지정근거 마련,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

- 대학별 장애대학(원)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 추·구체화(구체적 기준 제시 등) 검토

※ (추·구체화 예시) 대학 내 지원 서비스 및 보조기기 구비 현황 등

③ 현장 의견 반영하여 장애대학(원)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

- (지원 사업 개편) 장애대학(원)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·재구조화하고,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 개선*

* 같은 시간 다(多) 인력지원 강화,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, 원격지원 서비스 다각화 등

※ 장애대학(원)생 지원사업 주요 현황 : 인력지원사업(전문인력지원, 일반인력지원), 원격프로그램 지원, 보조기기 지원사업(대학지원, 개인지원) 등

- (거점대학 중심 교육·취업지원 활성화)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·취업 지원, 대체자료(예: 전공서적) 제작 등의 역할 강화

- (국립대학 장애학생 지원 강화)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, 국립대학 승강기 등 편의시설 개선 추진

④ 현장 소통 및 협업 강화

- (수요자 참여 정책 모니터링) 장애대학(원)생, 교육지원인력이 참여하는 점검단(모니터단)을 운영하여 정책을 진단·개선하고,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 지속

- (대학 소통 및 협업 강화)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업 체계 구축 등 위한 워크숍 실시 및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소통 강화